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7
----------	-------

제출년월일 : 2026.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동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당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수당 간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당의 중복지원 방지(제3조)

나. 수당 간 중복지급 방지(제10조, 제10조의 2)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와 지원의 원칙)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4)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3. 5.~2026. 3. 25.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로 한다”를 “보훈단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일 법령에 따른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수당은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배우자 본인이 제8조 및 제10조의 지급 당사자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중 “조례 등”을 “다른 조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u>보훈단체</u>로 한다.</p> <p>1. ~ 8. (생략)</p> <p>제10조(참전명예수당)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1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u>조례</u>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p>	<p>제3조(지원대상) ----- ----- ----- ----- ----- <u>보훈단체</u>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일 법령에 따른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 <u>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10조(참전명예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수당은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u></p> <p>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배우자 본인이 제8조 및 제10조의 지급 당사자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u></p> <p>제12조(중복지원 금지) ----- ----- <u>다른 조례 등</u>----- -----</p>

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선희정
연 락 처	02-3153-8807